

|       |            |
|-------|------------|
| 의안번호  | 2215338    |
| 의 퇴 인 | 한병도의원      |
| 회 답 일 | 2026.1.16. |
| 추계번호  | 25D7041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sup>1)</sup>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26조의2<br>(「주민등록법」에<br>대한 특례) |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가 관할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의 주소를 주민등록지와 함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등록할 수 있음<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등록지를 등록한 주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재량규정 |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26조의2<br>(「주민등록법」에<br>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 주민등록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의 주소(이하 “부등록지”라 한다)를 주민등록지와 함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 부등록지를 등록한 자(이하 “준주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본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에서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하는 읍·면의 경우에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현행법에서는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

- 개정안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부등록지와 준주민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등록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계획이 도출된 이후 등록 예상 인원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지보수 비용 등의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부등록지 등록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과 그 밖에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시스템 개편 비용 등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준주민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 사업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하기 곤란함

### Ⅲ. 부대의견

□ 없음

### Ⅳ. 작성자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임홍연 | 김안나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임홍연 | 02-6788-4673 | limhy@nabo.go.kr |